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개요



사업참여 대상 및 내용

- 대상** | 기술지원 : 100인 이상 모기업 300개소(건설업 제외)
매칭 컨설팅 비용지원 : 모기업 선정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내용** | 기술지원 :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에 대한 공단의 기술지원 및 평가
매칭 컨설팅 비용지원 : 모기업이 선정한 건설링 기관의 협력업체 컨설팅
수행 비용을 정부(공단)와 모기업이 각각 50%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
- 선정** | 아래의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 모기업 선정

사업대상 우선선정 기준

- ① 협력업체 컨설팅 지원 참여(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포함)
- ② 위험업종 모기업 및 협력업체
- ③ 중대재해 취약 협력업체 다수 참여
- ④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업체 다수 참여
- ⑤ 지역별 우선선정 항목
- ⑥ 최근 3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및 우수등급(A등급) 모기업

사업참여 신청 및 접수

- 사업참여 신청기간** | (1차) '23. 2. 28(화) ~ 3. 14(화)
(2차) 3월말 ~ 4월초(예정)
※ 2차 신청에 따른 사업참여 추가 공고 예정(3월말)
- 접수처** | 모기업 소재지 관할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안전보건체계지원부
- 매칭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기간** | 사업대상 선정 ~ 8월 중, 수시

참여 사업장 및 우수기업 선정 시 혜택

- ① 고용노동부 장관 우수사업장 선정서
- ②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감독대상 미포함, 특별감독은 대상 포함)
- ③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 ④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보조금) 우대 및 정부의 각종 금융혜택

상생협력활동 추진 우수사례

- 상생협력활동 참여사업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7월중)
※ 세부 일정이 확정되면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사업장에 안내 예정
- 우수사례 홈페이지 게시
※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추진사례

우수사업장 선정서 수여식 개최

- '24년 1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우수사업장 선정서 수여식 개최 예정

지역별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일선기관명	관할구역	전화번호
서울광역본부	(우 04512)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봉래동, 우리빌딩)7층	02-6711-2965
부산광역본부	(우 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4층	051-520-0531
광주광역본부	(우 62364)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9층	062-949-8745
인천광역본부	(우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032-510-0608
경기지역본부	(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7층	031-259-7172
대구광역본부	(우 41939)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1층	053-609-0524
대전세종광역본부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2층	042-620-5615

공단본부 사업담당
052-703-0631, 0633(자율안전사업부)

2023-산업안전실-92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대기업(모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이 함께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이란?



-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고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가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력업체)은 대기업(모기업)에 비해 근로자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모기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우수모형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2.1.27.))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여
협력업체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022.11.30.)에 따라 정책과제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전략 채택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 기반 마련을 위해 위험성평가 역량 향상 등 지원·관리 필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시작입니다.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추진절차별 수행업무

- 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 방법 | 공단 광역본부별 지원반 구성(2인 이상)하여 현장방문 기술지원

추진 절차별 수행 업무

구분	수행업무
1 사업공고, 설명회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사이트 등 매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 모집공고 ○ 사업 대상(기업) 설명회 개최(광역권역별)
2 참여신청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신청 (접수:광역본부별(경기지역본부 포함)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
3 사업대상 선정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선정) 광역본부별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 본부 보고 ○ (2차 선정)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장 최종 확정 ○ (선정 통보) 사업대상 선정 및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안내
4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모기업 ▶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선정 모기업은 컨소시엄 참여 협력업체와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수립 및 제출
매칭 컨설팅 지원 신청 [모기업 ▶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매칭 컨설팅 지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소요비용을 일정비율로 부담 : 공단(50%), 모기업(50%)
5 사전기술지원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업에서 제출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사전검토 및 현장진단을 통한 수행계획서 보완 및 개선 요구
6 확인기술지원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의 이행수준 모니터링 실시
7 상생협력 활동평가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평가
8 추진실적 제출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측정 결과(목표 달성도)
9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노력도와 성과 창출도」 평가
10 우수기업 선정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회 구성(본부)을 통한 우수기업 선정후보에 대한 적정성 심의 및 최종 선정(24년 1월중)
11 사후관리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업에 대하여 선정 유효기간(2년) 동안 주기적 실태점검 (선정 다음 연도부터 매 1년)

상생협력활동 매칭 컨설팅 지원 추진절차별 수행업무

- 대상 | 모기업이 선정한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 내용 |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소요 비용* 지원
 - *정부(공단)와 모기업 각각 50% 비율 부담

추진 절차별 수행 업무

구분	수행업무
1 사업공고, 설명회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사이트 등 매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 모집공고 ○ 사업 대상(기업, 컨설팅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광역권역별)
2 컨설팅기관 풀(Pool) 구성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공고 시 컨설팅기관 풀(Pool) 구성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신청단계부터 컨설팅기관 관련 정보를 주기 제공 ○ 기본 등록(고용부 지정) 기관 외 사업참여 희망 컨설팅기관 수시 등록
3 지원계획 수립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업이 컨설팅기관을 자율 선정 → 매칭 컨설팅 지원계획서 작성
4 참여 신청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신청 (접수 : 광역본부별(경기지역본부 포함)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칭 컨설팅 지원계획서 제출
5 지원기업 선정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모기업 및 협력업체) 선정 및 지원계획서 승인
6 분담금(잔금) 납부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업 분담금 납부(협약금액의 50%) : 모기업 → 컨설팅기관 입금
7 협약 체결 및 착수금 지급 [요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공단-모기업-협력업체-컨설팅기관) 간 협약서 작성 ○ 공단 지원금의 최대 60% 착수금 지급 : 공단 → 컨설팅기관 입금
8 컨설팅 수행 [컨설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확인서 제출, 지원계획에 따른 수행일지 작성 ○ 지원계획 변경 사항 보고(필요 시)
9 이행 모니터링 [공단,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 컨설팅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행 모니터링(중간점검) 실시
10 수행완료 평가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모기업, 컨설팅기관 → 공단 ○ 수행완료 보고서 평가 : 심사위원회 ○ 평가결과에 따라 공단 분담금(잔금) 지급
11 분담금(잔금) 지급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통보 : 공단 → 모기업, 컨설팅기관 ○ 분담금 지급 요청 : 컨설팅기관 → 공단
12 성과분석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효과는 분석, 우수사례발굴 ○ 참여기업(모기업,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별 기술지원 내용

구분	지원분야	세부내용
산업 안전 분야	기본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및 실행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방법 - 위험성평가 적정성에 대한 현장 확인 -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사용법 및 시현 - 위험성평가 연계 TBM 활용법 등
	자율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 중대재해 취약분야(3대사고유형·8대요인) 중점으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력] 사다리·지붕·고소작업대·비계 [끼임] 방호장치·LOTO [부딪힘] 흔저작업·충돌방지장치
	자율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장소 위험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정설계도서 파악 ② 공정조사(누출원의 종류, 수, 위치) ③ 누출원 계산 ④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⑤ 폭발위험장소 개선대책 수립 ⑥ 폭발위험장소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산업 보건 분야	자율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공정선정 ②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③ 노출수준 빈도 결정 ④ 유해성 강도 결정 ⑤ 위험성 계산·결정 ⑥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⑦ 예방조치 실행 등
	자율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 조사 및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②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기본조사표(공경별) ③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표문지) ④ 유해요인조사 증상 조사표(통계) ⑤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작성 ⑥ 작업환경 개선 실시 ⑦ 유해성 주지(교육) 및 조사방법 교육 등
	자율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내 밀폐공간 조사, 유해가스 측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밀폐공간 조사 ② 밀폐공간프로그램 수립절차 ③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④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대책 ⑤ 보호구 ⑥ 밀폐공간 표지부착 및 교육 등
안전관리 역량향상	자율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③ 경영자 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안전의식 확산	각 과제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 인식개선,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등

안전투자 혁신사업

- 사망사고 발생강도와 빈도가 높은 위험한 기계 또는 유해한 공정의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금융지원 사업

구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인증제도 이전 제작된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이동식크레인(2009년 9월 30일 이전 제작)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2009년 6월 30일 이전 제작) - 관동식·원치식·유압식 리프트 - 노후 위험기계(6종) :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타워 및 이동식 제외), 전단기, 칸베이어, 롤라기 ② 위험공정* 개선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뿌리산업(주조, 소성, 표면처리업 중)의 노후화된 공정 및 설비 보유 사업장 -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 사업장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지원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 보증금 or 할부금융 선수금 or 보조금을 지원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https://anto.kosha.or.kr) 신청, ☎ 문의처 : 1644-4555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기계 교체 : 소요비용의 50%(최대 7천만원 한도) ○ 위험공정 개선 : 소요비용의 50%(최대 1억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등 대상으로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구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Quick-Pass포함)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 영 별표 21 「대여차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따른 2호~24호 설비 보유 또는 임대업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 ○ 태양광 설치·작업공정 보수사업장(50억 미만 건설업)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공정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지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사고 예방목적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사항에 대한 즉시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요인을 개선할 경우 ○ 컨설팅기술지도 지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Quick-pass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에 우편 및 직접방문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①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②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③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④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를 상위업종 등) 단, Quick-pass는 사업장 당 350만 까지(1회) ○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단, Quick-pass는 사업장 당 소요금액의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 지원비율 : 공단 판단 금액의 50%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내용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소요비용 전액 지원(고정금리 1.5%, 3년 거주 기반 분할상환)